

# 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. 1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대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월정사의 역사·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명상메카를 조성하고자
- 『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(안)』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용도지역결정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	변경후	비 고
합 계	210,289	-	210,289	
계획관리지역	124,805	증) 85,108	209,913	
생산관리지역	13,828	감) 13,828	-	
보전관리지역	376	-	376	
농 립 지 역	71,280	감) 71,280	-	

###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면적

기 정	변 경	증.감	비 고
-	210,289㎡	증 210,289㎡	신 설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□ 주민의견 청취(공람·공고)

가. 공람기간

- 1차 : 2014.09.17 ~ 09.30(14일간)
- 2차 : 2015.01.17 ~ 01.21(14일간)

나. 공람방법 : 일간신문(강원일보, 강원도민일보, 국민일보), 군 홈페이지 게재

다. 공람장소 : 군청 도시주택과 및 진부면사무소

라. 제출의견 : 없음

#### □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및 관계 전문가 의견

가. 주요의견

-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검토시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3-2-9(3)항목의 기준(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) 적합여부 검토
- 사업성격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는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조치계획

-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 2-1-2-1(5)에 의거 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는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□ 관련부서협의

가. 협의기간 : 2014.08.21 ~ 2014.10.23

나. 협의부서 : 4개기관, 17개부서

- 국립공원관리공단, 원주지방환경청
- 평창군청 6개부서(상하수도사업소, 산림과, 문화관광과, 농축산과, 안전건설과, 환경과)
- 강원도청 9개부서(지역도시과, 농촌정책과, 친환경농업과, 문화예술과, 환경정책과, 맑은물보전과, 방재담당관, 특구육성과, 산림자원과)

다. 주요의견(원주지방환경청)

- 사업지구 인근에 국립공원 및 상수원인 오대천이 위치함으로써 사업시행시 상수원 확보 및 각종 야생생물의 서식·생육에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

사업규모 대폭 축소 추진 필요. ⇒ 관리계획 반영

- 자연적으로 형성된 오대천 유하형태 유지 및 계획홍수위 선에서 20m이상 원형보전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재수정·제시
- 오대천에 교량 설치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육수동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대천 서쪽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내용을 조정하는 등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⇒ 관리계획 반영

# 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## 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###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획관리지역	124,805	증) 85,108	209,913	99.8	
생산관리지역	13,828	감) 13,828	-	-	
보전관리지역	376	-	376	0.2	
농림지역	71,280	감) 71,280	-	-	
계	210,289	-	210,289	100.0	

### 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	용 적 륜 (%)	결정(변경) 사유
		기 정	변 경			
-	진부면 동산리 35번지 일원	생산 관리 지역	계획 관리 지역	13,828	100%	·오대산의 자연, 역사·문화자원 및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, 평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코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-	진부면 동산리 32-10번지 일원	농림 지역	계획 관리 지역	71,280	100%	

## 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### 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오대산 자연명상지구	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	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	-	증) 210,289	210,289	-

### 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신설	①	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	210,289	· 오대산의 자연, 역사·문화자원 및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평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함

## 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

### 1)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	면적 (㎡)	가구	비고
				위치	
총 계			210,289	-	
가구번호 와 동일	A	특정시설용지	101,819	진부면 동산리 36-1번지 일원	
	B	공공시설용지	33,655	진부면 동산리 32-1번지 일원	
	C	녹지용지	74,815	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	

2)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	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적(㎡)	
총 계		-	210,289	
특정시설용지(A)		-	101,819	
A-1	명상시설1	진부면 동산리 36-1번지 일원	7,834	
A-2	명상시설2	진부면 동산리 28-2번지 일원	61,254	
A-3	문화시설1(한강시원지체험관)	진부면 동산리 17-5번지	4,992	
A-4	문화시설2(월정사전시관)	진부면 동산리 17-10번지	16,844	
A-5	문화시설3(사고박물관)	진부면 동산리 17-10번지	5,773	
A-6	상업시설	진부면 동산리 332번지 일원	4,003	
A-7	안내센터	진부면 동산리 341번지 일원	1,119	
공공시설용지(B)		-	33,655	
B-1	광 장	진부면 동산리 32-1번지 일원	2,380	주요시설광장
B-2	주 차 장1	진부면 동산리 333번지 일원	8,422	대형주차장
B-3	주 차 장2	진부면 동산리 343번지 일원	10,428	소형주차장
B-4	저류시설1	진부면 동산리 349번지 일원	864	
B-5	저류시설2	진부면 동산리 26-8번지 일원	1,366	
B-6	도 로 1	진부면 동산리 17-3번지 일원	7,807	
B-7	도 로 2	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	1,717	
B-8	도 로 3	진부면 동산리 329번지 일원	671	
녹지용지(C)		-	74,815	
C-1	원지형보전녹지 1	진부면 동산리 50-1번지 일원	3,439	
C-2	원지형보전녹지 2	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	11,047	
C-3	원지형보전녹지 3	진부면 동산리 26-8번지 일원	2,982	
C-4	경관녹지 1	진부면 동산리 25번지 일원	279	
C-5	경관녹지 2	진부면 동산리 36-1번지 일원	2,275	
C-6	경관녹지 3	진부면 동산리 19-2번지 일원	2,818	
C-7	경관녹지 4	진부면 동산리 26-8번지	1,589	
C-8	경관녹지 5	진부면 동산리 320번지 일원	5,577	
C-9	경관녹지 6	진부면 동산리 330번지 일원	7,171	
C-10	경관녹지 7	진부면 동산리 18번지 일원	7,109	
C-11	경관녹지 8	진부면 동산리 17-9번지	2,485	
C-12	경관녹지 9	진부면 동산리 32-1번지 일원	28,044	

#### 4.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A-1 (명상시설1)	진부면 동산리 36-1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허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</li> </ul> </li> <li>•불허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</li> </ul>	
		건폐율	•40%이하	
		용적률	•80%이하	
		높 이	•2층이하	
		건축선	-	
		기 타	•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A-2 (명상시설2)	진부면 동산리 28-2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허용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시술소 제외)</li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</li> </ul> </li> <li>•불허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</li> </ul>	
		건폐율	•40%이하	
		용적률	•100%이하	
		높 이	•4층이하	
		건축선	•건축한계선 : 도로 및 녹지용지변 3m /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		기 타	•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A-3 ~ 5 (문화시설)	진부면 동산리 17-5번지, 17-10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허용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(관람장, 동·식물원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불허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</li> </ul>	
		건폐율	•40%이하	
		용적률	•100%이하	
		높 이	•4층이하	
		건축선	•A-5(건축한계선) : 도로변 3m /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		기 타	•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A-6 (상업시설)	진부면 동산리 332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허용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시술소 제외)</li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판매시설 중 상점</li> </ul> </li> <li>•불허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</li> </ul>	
		건폐율	•40%이하	
		용적률	•100%이하	
		높 이	•4층이하	
		건축선	•건축한계선 : 도로변 3m /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기 타	•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		
A-7 (안내센터)	진부면 동산리 341번지 일원	용 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허용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·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시술소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불허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 </li> </ul>	
		건폐율	•40%이하	
		용적률	•100%이하	
		높 이	•4층이하	
		건축선	•건축한계선 : 도로변 3m /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
기 타	•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			

#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개요

## 1. 계획의 개요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
- 조성면적 : 210,289㎡
- 주요시설 : 특정시설용지(명상시설, 문화시설, 상업시설, 안내센터), 공공시설용지, 녹지용지
- 사업비 : 295억원(국비 : 148억원, 도비 : 44억원, 군비 : 103억원)
- 사업기간 : 2014년 ~ 2017년
- 시행자 : 평창군수(문화관광과)

### 나. 계획의 범위

#### 1) 공간적 범위

- 위치 :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
- 면적 : 210,289㎡

#### 2) 시간적 범위

- 기준년도 : 2014년
- 목표연도 : 2017년

#### 3) 내용적 범위

##### ■ 군관리계획

-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
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
-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상에 관한 계획

##### ■ 기타계획

- 환경적 요인에 대한 검토계획
- 교통적 요인에 대한 검토계획
-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계획
-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경관영향 검토계획

다. 계획의 추진경위

- 2013.06.05 :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오대산 자연명상지구) 결정(변경) 용역 계약
- 2013.06.10 :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오대산 자연명상지구) 결정(변경) 용역 착수
- 2013.12.30 :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안 용역 중간보고
- 2014.01. ~03. : 사전협의(원주지방환경청, 농림축산식품부, 강원도 지역도시과)
- 2014.03.21~04.11: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서면 심의(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)
- 2014.04.22~05.06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(평창군, EIASS)
- 2014.05.27 : 군관리계획(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신청
- 2014.06.09 : 신청서 보완 요청(도시주택과 → 문화관광과)
- 2014.08.18 : 보완 신청서 제출(문화관광과 → 도시주택과)
- 2014.08.21~10.23: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(4개기관, 17개부서)
- 2014.09.17~09.30: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, 군계획시설)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공고(14일간)
- 2015.01.02 : 관련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에 따른 도치계획 및 도서 제출 (문화관광과 → 도시주택과)
- 2015.01.07~01.21: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(안) 재공람공고(14일간)
- 2015.01.08 : 관련실과 재협의(3개부서)

## 2. 편입토지 현황

### 지목별 총괄표

지 목	소계	전	대	도	임	차	구	천
면적(㎡)	210,289	149,604	2,498	10,848	32,313	6,555	5,695	2,776
구성비(%)	100.0	71.1	1.2	5.2	15.4	3.1	2.7	1.3
필지수	91	53	7	21	4	1	3	2
구성비(%)	100.0	58.2	7.7	23.1	4.4	1.1	3.3	2.2

### 소유자별 총괄표

구 분	면적(㎡)	구성비(%)	필지수	비 고	
합 계	210,289	100.0	92		
국공유지 소계	16,783	8.0	16		
국유지	국토교통부	4,850	2.3	4	
	농림축산식품부	8,031	3.8	6	
공유지	평창군	3,902	1.9	6	
사유지	195,506	92.0	75	월정사 소유	

### 지번별 편입토지조서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				352,664	210,289		
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2-1	도	5,769	2,160	국(국토교통부)	
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3	도	4,202	1,324	평창군	
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5	전	4,991	4,991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7	도	2,053	7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8	도	89	8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9	차	6,555	6,55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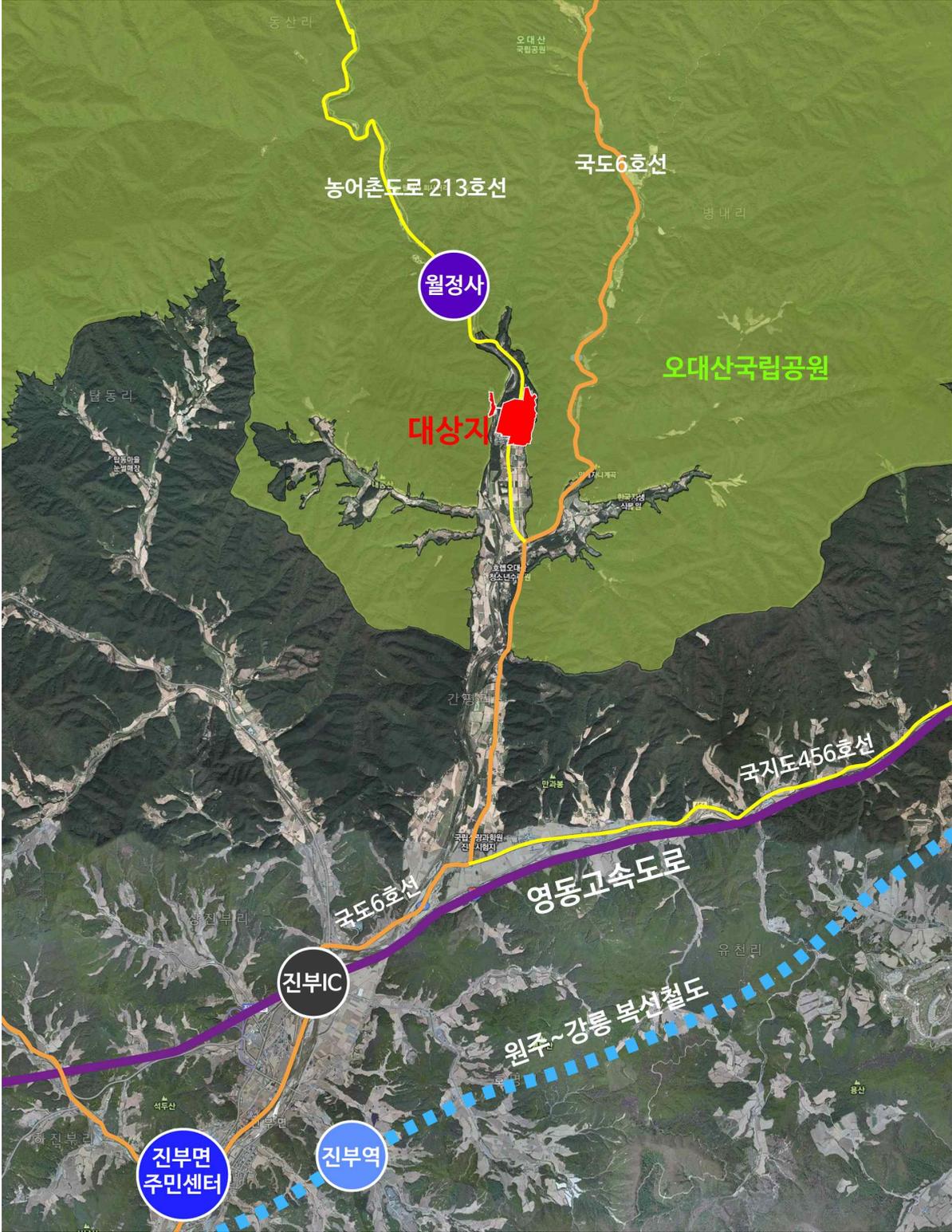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7-10	전	29,809	29,80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8	대	380	38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9-1	전	19,167	15,09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9-2	전	9,818	3,86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9-3	도	119	119	평창군	
1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19-4	도	1,395	1,39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0	대	400	40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1	대	311	311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2	대	294	29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3	전	489	48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4	임	52,704	20,35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1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5	전	496	49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4
1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6-8	임	30,142	9,26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7-2	도	1,392	873	평창군	
2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7-4	도	261	261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7-5	도	36	3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8-1	전	248	24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8-2	전	6,296	6,29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29	대	707	70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0	대	331	331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-1	임	2,276	2,27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2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-2	도	509	509	평창군	
2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-3	도	60	6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-4	도	33	3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-6	임	417	41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1	전	16,845	16,84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2	전	540	54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3	도	945	945	평창군	
3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4	도	76	7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3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5	도	109	10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9	전	2,364	82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-10	전	48	4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3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-6	도	946	132	평창군	
4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-19	대	455	7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4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5	전	426	42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5
4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6-1	전	5,666	5,50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6
4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6-2	전	598	59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7
4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7	천	403	40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8
4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7-1	도	235	235	국(국토교통부)	
4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8	전	268	26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8
4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8-1	도	82	82	토지정보 없음	
4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50-1	전	7,702	3,47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8
4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50-2	전	347	34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8
5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09	천	59,727	2,373	국(국토교통부)	
5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1	구	425	425	국(농림수산부)	
5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2	전	3,574	3,57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3	전	1,818	1,81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4	전	1,790	1,79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5	전	1,590	1,59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6	전	1,540	1,54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7	전	1,614	1,61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8	전	1,793	1,79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5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19	도	1,100	1,100	국(농림수산부)	
6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0	전	1,930	1,93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1	전	1,704	1,70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2	전	1,866	1,86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3	전	1,828	1,82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4	전	1,758	1,75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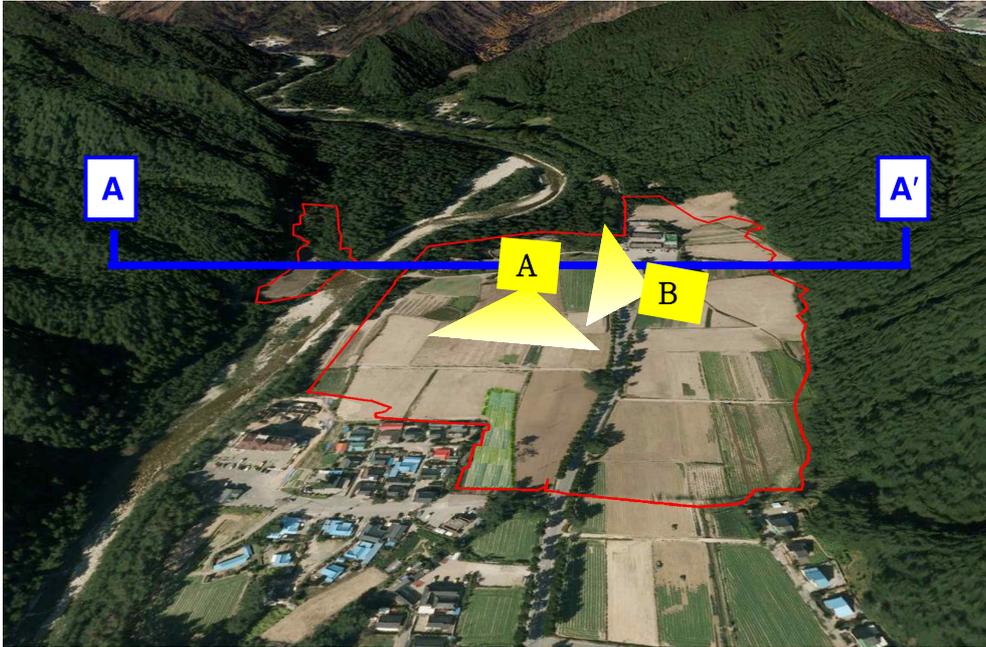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
						성명	주소
6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5	구	980	980	국(농림수산부)	
6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6	전	1,825	1,82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7	전	1,810	1,81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8	전	2,212	2,212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6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29	전	1,348	1,34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0	전	1,610	1,61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1	도	488	488	국(농림수산부)	
7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2	전	1,028	1,02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3	전	1,846	1,84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4	전	1,389	1,389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5	전	1,548	1,54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6	전	1,882	1,882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7	전	1,934	1,93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8	전	1,848	1,84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7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39	전	2,490	2,490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0	도	748	748	국(농림수산부)	
8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1	전	1,686	1,68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2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2	전	1,847	1,847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3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3	전	1,744	1,744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4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4	전	1,766	1,76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5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5	전	2,133	2,13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6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6	전	1,158	1,15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7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7	전	908	908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8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8	전	1,946	1,043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89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49	전	1,848	1,016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90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50	전	1,138	555	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월정사	동산리 63
91	평창군 진부면 동산리	370	구	7,643	4,290	국(농림수산부)	

# 관 련 도 면

## 입지여건 현황 (항공사진)



대상지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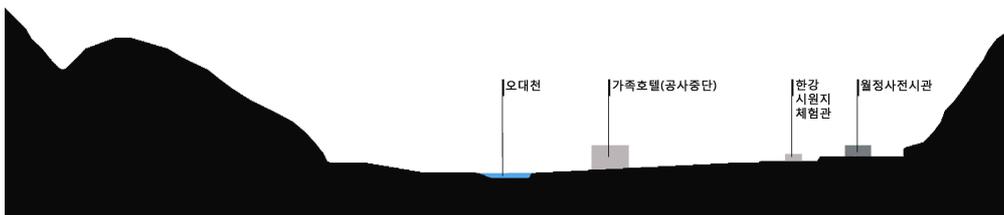
< A view >



< B view >



< A - A' view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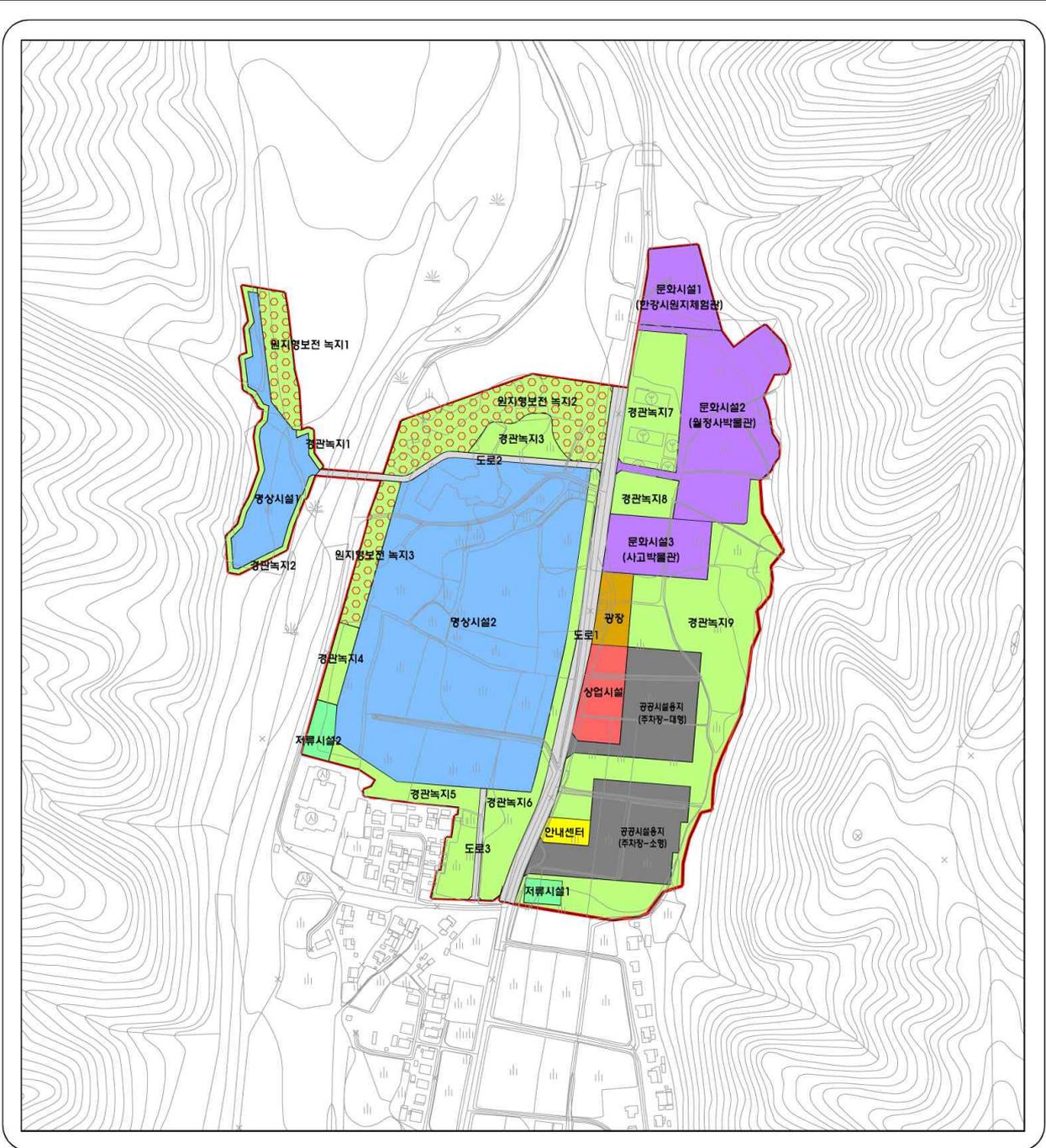


주) 가족호텔 : 철거완료(2014년 3월)

조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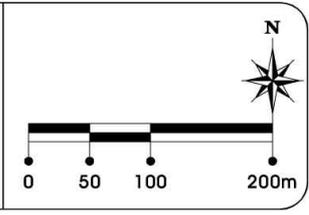
**토지이용계획(안)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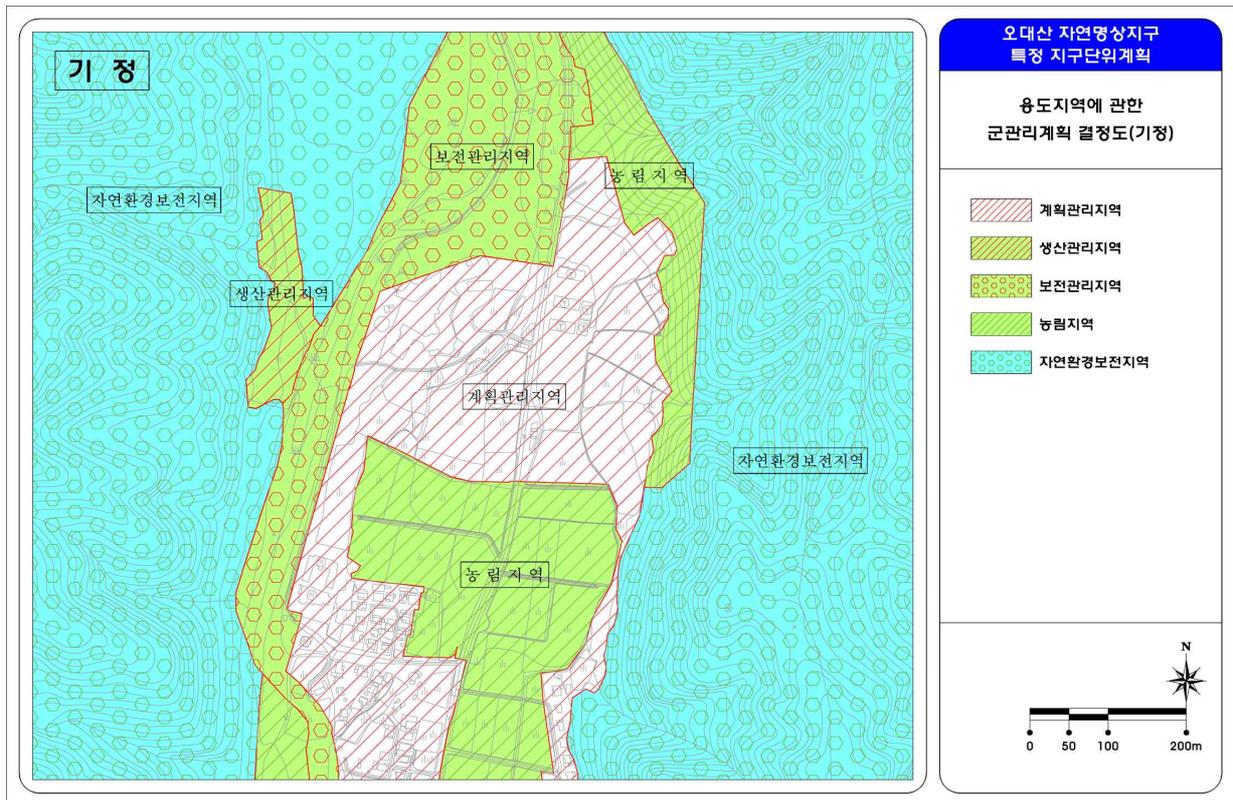
**오대산 자연명상지구  
특정 지구단위계획**

**토지이용 계획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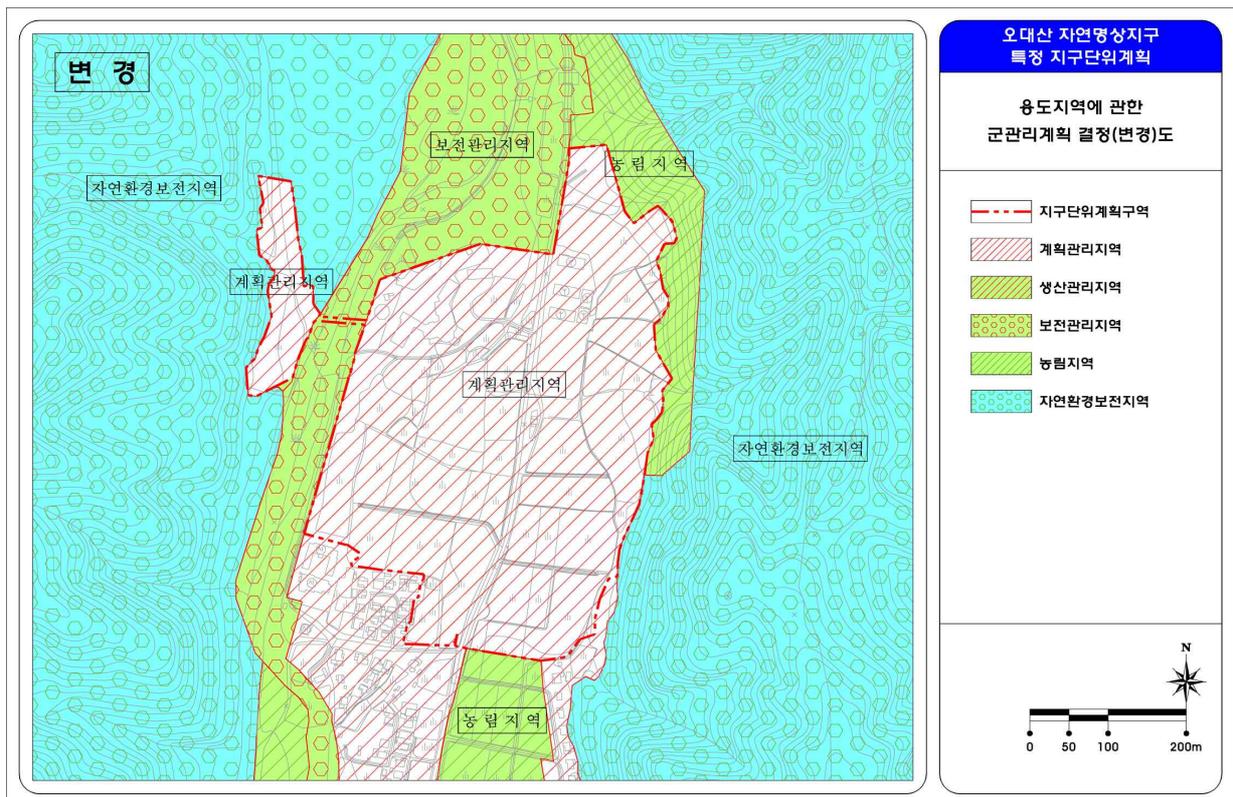
--- 지구단위계획구역		
<b>특정시설용지</b>	<b>공공시설용지</b>	<b>녹지시설용지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상시설</li> <li>문화시설</li> <li>상업시설</li> <li>인내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 장</li> <li>주 자 장</li> <li>도 로</li> <li>저류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지형보전녹지</li> <li>경관녹지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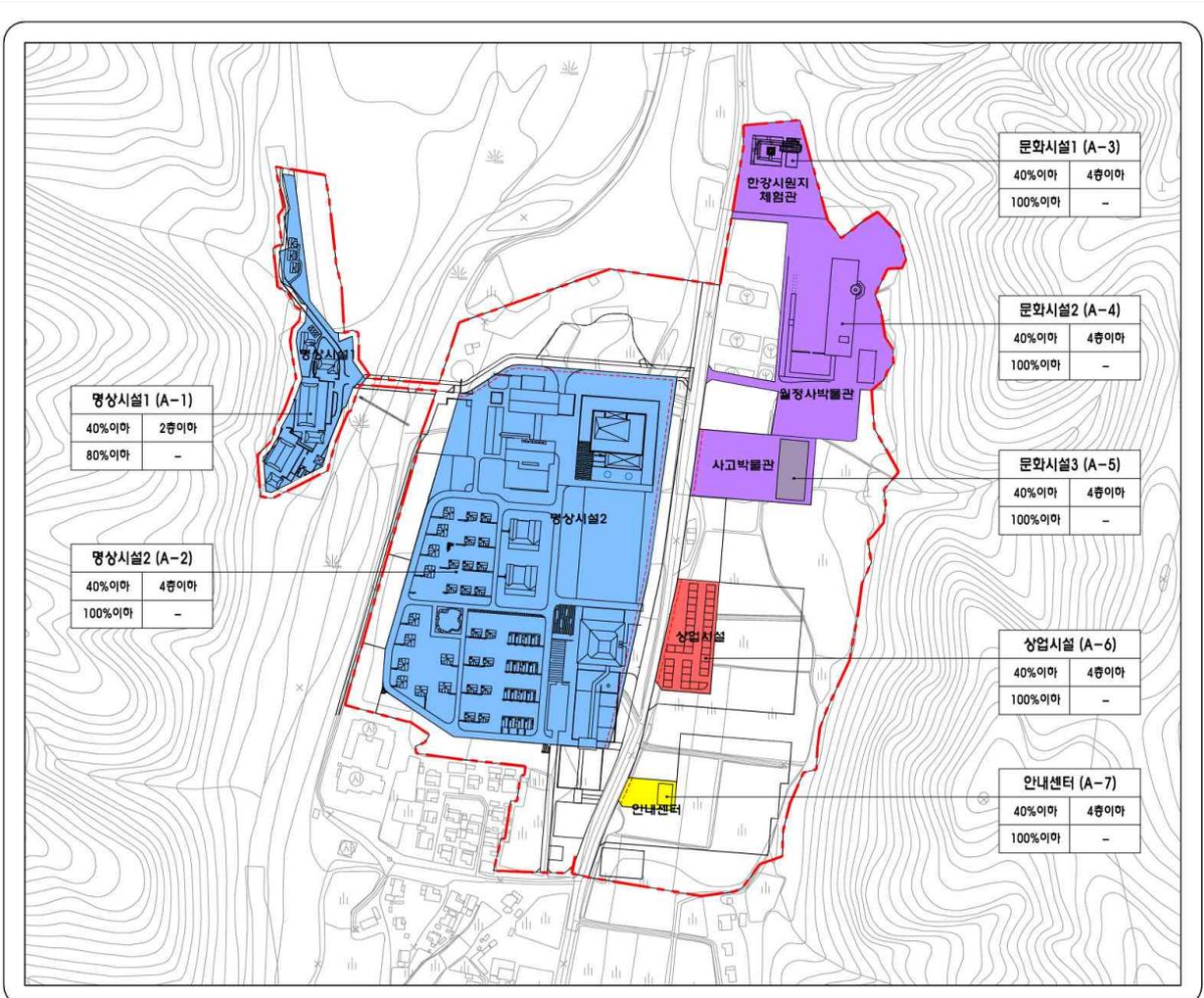
##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기정)(안)도



##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도



# 종합도



명상시설1 (A-1)	
40%이마	2층이마
80%이마	-

명상시설2 (A-2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문화시설1 (A-3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문화시설2 (A-4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문화시설3 (A-5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상업시설 (A-6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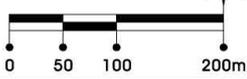
안내센터 (A-7)	
40%이마	4층이마
100%이마	-

##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

###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획지선
- 건축한계선

가구 및 획지번호	
건폐율	최고층수
용적률	최저층수



명상시설1 A-1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-
명상시설2 A-2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편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사술소 제외)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건축한계선: 도로 및 녹지용지면 3m
문화시설1 A-3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, 등·식물원 제외)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-
문화시설2 A-4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, 등·식물원 제외)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-
문화시설3 A-5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, 등·식물원 제외)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건축한계선: 도로면 3m
상업시설 A-6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편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사술소 제외)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판매시설 중 상점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건축한계선: 도로면 3m
안내센터 A-7	용도	이용용도: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편주점, 노래연습장, 안마사술소 제외) 불이용용도: 이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축선	건축한계선: 도로면 3m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### 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제22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  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   - 가. 도로중 주간선도로(시·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·군 상호간이나 주요 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·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    - 나. 철도중 도시철도
    - 다.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(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)
    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    - 마. 유통업무설비
    - 바. 학교중 대학
    - 사. 운동장
    - 아. 삭제 <2005.9.8>
    - 자.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    - 차. 화장장
    - 카. 공동묘지
    - 타. 납골시설
    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    - 하. 폐기물처리시설
    - 거. 수질오염방지시설